

식품중 동물약품잔류 방지를 위한 안전사용

- 제11차 CODEX 식품중 동물약품잔류 분과위원회 활동

박 종 명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독성화학과장

I. CODEX란 무엇인가?

우리가 흔히 CODEX라고 하는 것은 CODEX ALIMENTARIUS를 말하는 것으로서 라틴어의 CODEX ALIMENTUM(CODEX: CAUDEX:根幹, 줄기; ALIMENTUM:營養, 食品)에서 유래되었으며 그 의미는 Food Code 즉 食品公典 (食品法典)이다. 그러므로 UN의 CODEX ALIMENTARIUS 는 “모든 국가를 위한 식품공전(국제식품규격)”이라고 말할 수 있다.

CODEX 는 1962년 UN의 FAO 와 WHO 에서 세계 식품산업의 성장과 소비자 건강보호를 위하여 국제적 표준 설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UN의 부속기구로서 식품공전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CAC 국제식품규격위원회라고도 함)가 발족함으로써 제정되기 시작하였다.

CODEX ALIMENTARIUS의 목적을 그대로 소개하면, “국제간 식품규격의 조화(일치)를 이루고 그렇게 함으로서 국제간의 교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식품의 정의(定義)와 규격기준들을 제정하기 위한 것” (To guide and promote the elaboration and establishment of definitions and requirements for foods, to assist in their harmonization and, in doing so, facilitate international trade.”) 이라고 되어있다. CODEX ALIMENTARIUS에는 CAC에서 정한 각종 식품의 표준(규격기준)과 실행규범, 가이드라인, 권장사항 그리고 그에 대한 각국정부의 조치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CAC의 조직 기구로 사무국(FAO/WHO Secretariat)은 FAO(Food Quality and Standards Service of FAO's Food Policy and Nutrition Division)와 WHO (Food Safety Unit of WHO's Health Protection and Promotion Division)에 두고 있으며, 위원회의 사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집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 가 있고, 부속기구로는 9개의 분야별분과위원회, 15개의 상품별분과위원회 및 5개의 지역별분과위원회가 있으며, 전문위원회로서 식품첨가물과 오염물질을 다루는 식품첨가물전문위원회(Joint FAO/WHO Expert Committee on Food Additives, JECFA), 식품방사선조사전문위원회(Joint FAO/IAEA/WHO Expert Committee on Food Irradiation) 및 농약잔류전문위원회(Joint FAO/WHO Meeting on Pesticide Residues, JMPR)가 있다.

CODEX 식품 중 동물약품잔류 분과위원회(Codex Committee on Residues of Veterinary Drugs in

Foods, CCRVDF)는 축산식품중 동물약품 등 유해한 잔류물질의 잔류허용한계 설정,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설정, 동물약품의 안전사용을 위한 평가, 허가, 관리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하는 수의학분야의 전문분과위원회로서 1986년 최초로 구성되어 금년으로 11차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그동안 총 21종의 동물약품에 대한 잔류허용한계를 설정하였다. 소비자들에게 축산물의 안전성이 최대의 관심사인 현 시점에서 CCRVDF의 내용은 축산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감시활동이 기본임무인 우리 수의사들의 업무에 직접적 관련이 되므로 대한수의사회지의 지면을 빌어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II. 제 11차 CODEX 식품중 동물약품잔류 분과위원회

① 회 의 명 :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제11차 식품중 동물약품잔류 분과위원회
(FAO/WHO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Eleventh Session of the Committee on Residues of Veterinary Drugs in Foods)

② 회 의 기 간 : 1998. 9. 14 ~ 9. 18(5일간)

③ 회 의 장 소 : 미국 워싱턴D.C., 워싱턴 플라자호텔 국제회의실

④ 한국대표단 :

농림부 축산국 축산위생과	수의사무관	양 흥 구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독성화학과장	박 종 명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미생물과	보건연구사	박 성 국
LG화학 기술연구소	동물약품부장	장 병 선

⑤ 참 식 : 세계 42개국 및 15개 국제기구 대표 166명
- 96(제10차):34개국 및 12개 국제기구 141명

▣ 참 가 국

알제린, 호주, 바베이도스, 벨지움, 브라질, 카메룬, 카나다, 칠레, 중국, 코스타리카,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헝가리, 인도네시아,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태리, 일본, 대한민국, 레바논, 멕시코, 네델란드, 뉴질랜드, 니카라과, 나이제리아, 노르웨이, 폐루, 필립핀, 폴란드, 풀투갈, 슬로바키아, 남아프리카,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태국, 아랍에미레이트, 영국, 미국, 우루과이 (42개국).

▣ 참석국제기구 (15개 기구)

- AOAC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Official Analytical Chemists)
- CSPI (Center for Science in the Public Interest)
- COMISA (Consultation Mondiale De L' Industrie De La Sante Animale, World Consultation



of the Animal Health Industry)

- Consumers International
- EU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 EC (European Commission)
- 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 ICA (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 IDF (International Dairy Federation)
- IICA (Inter-American Institute for Cooperation on Agriculture)
- ITIC (International Toxicology Information Center)
- OIE (Office International des Epizooties)
- PAHO (Pan American Health Organization)
-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 WVA (World Veterinary Association)

⑥ 의장

미국 FDA의 Center for Veterinary Medicine 소장인 Dr. Stephen Sundlof 박사가 의장으로 회의를 진행하였음.

⑦ 개회인사

미국 농무부 식품안전검사청장이며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부의장(Administrator, 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Vice Chairperson of the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인 Mr. Tom Billy의 연설이 있었음. Mr. Billy는 식품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제교역을 촉진시키기 위한 국제표준 설정에 있어서 Codex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WTO/SPS 협정 및 TBT 협정 문안에서의 Codex 표준의 영향을 강조하였음. Mr. Billy는 현재까지의 위원회 활동과 진전을 치하하고, 특히 Codex내에서 과학의 역할에 대한 논의를 촉진시키는데 있어서의 중요한 역할을 언급하고, 정책결정의 기초로서 과학에 대한 강조를 계속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음.

⑧ 의제 채택

- ① 사무국에서 제안한 잠정 의제를 본 의제로 채택하였음.
- ② 위원회는 동물약품 최대잔류허용한계의 이해와 참조자료로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새로운 서식으로 검토하여 발간하기로 합의하였음. 또한 권장 분석방법에 대한 참조목록을 Codex총 회의 승인을 받아 Codex Alimentarius 3권에 별도로 등재하기로 하였음.

⑨ 레포트 보고자 임명 : 호주의 Dr. John Owusu 가 보고자로 임명됨.

⑩ 의제별 보고, 토의내용

■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및 유관 분과위원회의 활동 보고

- ◆ 본 위원회에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CAC) 절차집(procedural manual)개정; BST에 대한 최대잔류허용한계 초안; 단계별 최대잔류허용한계 및 초안의 채택; 식품 품질관리용 분석방법의 인증; 꿀·저지방육류 및 어류에 대한 최대잔류허용한계; WTO협정에서 Codex문서의 지위 및 수락에 대한 검토; 우수 동물사양 지침 초안 등에 관한 Codex총회 및 타 분과위원회에서 제기된 사안에 대한 보고가 있었음.
- ◆ 제22차 CODEX총회(97. 7)에서 6종의 동물약품 잔류허용한계가 확정되었음.

제 22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CAC)에서 확정된 축산물중 동물약품잔류 허용한계

품 명	축 종	부 위	설정치	한 국	용 도	
디미나젠	소	근육	500	미설정	구충제	
		간	12,000			
		신장	6,000			
		우유	150			
도라백틴	소	근육	10	미설정	구충제	
		간	100			
		신장	30			
		지방	150			
목시텍틴	소, 양	소	근육	20	미설정	구충제
		양	근육	50		
		간	100			
		신장	50			
		지방	500			
레바미솔	소, 돼지 양, 가금	근육, 신장, 지방	10	미설정	구충제	
		간	100			
트리클라벤다졸	소, 양	지방	100	미설정	구충제	
스피라마이신	소	신장	300	소, 돼지, 닭고기 25	항생제	
		우유	200			
	돼지	근육	200			
		간	600			
		지방, 신장	300			
	가금	신장	800			
		근육	200			
	소, 가금	간	600			
		지방	300			



◇ 소, 돼지, 면양, 닭 및 칠면조 등의 지방조직에 대한 옥시테트라사이클린(Oxytetracycline)에 대한 Codex 최대잔류허용한계 삭제

소, 돼지, 면양, 닭 및 칠면조의 지방중 Oxytetracycline의 최대잔류허용한계를 삭제하기로 한 제10차 CCRVDF의 결정에 동의하였으며 차기 Codex총회에서 확정될 것임. 이 결정에 근거하여, 이미 동물약품에 대한 최대잔류허용한계 데이터베이스에서 동 최대잔류허용한계는 삭제되었음.

◇ 동물약품 및 농약으로 동시 사용되는 물질에 대한 최대잔류허용한계

제22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제29차 및 제30차 농약잔류분과위원회(CCPR) 및 1997년 FAO/WHO 합동농약잔류에관한회의(JMPR)에서 CCRVDF와 CCPR간의 최대잔류허용한계 설정 방법의 차이에 관한 논의가 있었음. 이러한 논의결과 Codex내에서 특히, 화합물의 지방용해성에 대한 고려; 잔류에 대한 정의; 상품에 대한 정의, 특히 지방 함량과 관련 근육에 대한 정의; 동일 품목/물질 조합에 대해 권장된 수준; 및 위해평가에 사용되는 식이모델에 대하여 조화와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이 강조되었음. 본 위원회는 또한 농약 최대잔류허용한계에 대한 JMPR과 JECFA의 권고사항을 농업용 및 축산용과 조화시키도록 한 JMPR의 권고를 상기시켰음.

본 위원회에서는 조화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기 위하여 동물약품과 농약잔류분야의 비공식 전문가회의를 통하여 조정하도록 JECFA의 FAO사무국과 JMPR에 요청하였음. 이 회의결과는 CCRVDF 및 CCPR에 보고되어 논의될 것이며, 이 회의 결과에 따라 수많은 문제들이 검토되어야 하므로 위원회는 차기 회의까지 동 건에 대한 논의를 연기하였음.

◇ 농약 잔류검사를 위한 권장 시료채취방법의 개정

농약잔류분석을 위한 권장 시료채취방법 개정에 대한 제29 및 30차 CCPR 활동을 보고받았으며, 이는 농약 잔류분석과 동물약품 잔류검사를 위한 시료채취 방법이 서로 상이하게 될 것이므로, 농약 및 동물약품 잔류검사를 위한 상이한 시료채취 시스템간 조화의 중요성과 비실용성에 유의하여, 본 위원회는 CCRVDF와 식품수출입검사·증명제도분과위원회(CCFIEICS)의 견해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였음.

개정된 방법이 수의학적인 요구사항을 적절히 포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회는 CCPR이 채택한 개정 시료채취방법은 수의학적 용도가 아니라 식물보호용 목적으로 사용된 농약잔류에 대하여만 적용가능함을 명확히 하자는 데에 동의하였고, 또한 개정된 시료채취방법을 검토하도록 JECFA와 JMPR 비공식 협의회를 요청하였음.

개정안은 제23차 Codex총회에서 8단계로 최종채택하기 위하여 제30차 CCPR이 관련문서를 제출한 상태이므로, 총회에서 직접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 문서에 대한 의견을 제시토록 각 대표들에게 요청하였음.

■ 축산에서 항균물질 사용에 대한 WHO 활동

◇ WHO대표(Dr. Stoehr)는 내성균 및 내성결정 인자가 동물로부터 사람으로 전이되어 인체 감염 시 보다 치료하기 어려운 미생물학적 및 임상학적 증거가 증가되고 있다는 배경하에서 축산에서 항균물질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중보건학적 문제를 확인하기 위하여 최근 WHO가 주관한 2개의 회의가 있었으며, WHO의 초점은 인체 건강에 대한 것이었음을 보고함.

이러한 활동은 인체 건강문제를 평가하는 것과 관련된 과학적 정보에 근거한 것임을 언급하고, 어떠한 항균물질의 사용도 생태계의 내성균 선발 원인이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였음. 이러한 가능성은 사람에서 치료용으로의 사용뿐만 아니라 동물의 질병치료와 예방 및 성장촉진을 포함한 모든 용도에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식용동물 생산에서 항균물질 사용의 공중위생에 대한 영향의 정도에 대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우려를 유발할 충분한 증거가 있으며, 따라서 항균물질의 광범위한 적용과 관련한 문제를 통제하거나 완화하기 위하여 항균물질에 대한 동물용 및 인체용 모두에 있어서 규제조치가 필요하다고 하였음.

◇ 식용동물에 항균성약제 사용의 의학적 영향에 관한 WHO회의

본 회의에서는 동물유래 미생물의 내성 획득의 의학적 영향에 초점을 두었으며, 이것은 이미 공중 위생상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식품유래 **Salmonella**, **Campylobacter**, **Enterococci** 및 **E. coli** 가 실례로 강조되었고, 특별히 언급된 항균제는 Glycopeptides, Macrolides 및 Quinolones이었음. 식품표준의 관점에서, WHO는 국가기관이 세균의 내성 한계수준과 독성경감절차가 시작되어야 할 상황을 설정하여야 하며, 그리고 그러한 절차가 성공적이지 못할 경우 승인을 취소하여야 하고, 이러한 권고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국가차원에서 그리고 국제적으로 표준을 개발, 합의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WHO는 CCRVDF의 임무 중에 항균물질 내성 문제를 포함하도록 권고하였음. WHO는 동물에서의 성장촉진용 항균물질 사용은 그것이 인체용으로 사용되거나 인체용으로 사용되는 항균물질과 교차내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할 것을 권고하였음. 일반적으로 WHO는 성장촉진용 항균물질을 보다 더 안전한 비항균성물질로 대체하는 방향으로 체계적인 방법을 개발하고, 우선검토대상 화합물 목록을 설정하여 그 물질에 의해 유발되는 잠재적 건강상의 위험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권고하였음. 현재 특별히 우려의 대상이 되는 물질은 **virginiamycin**과 **avilamycin**으로서 사람에서의 문제는 반코마이신내성장구균(VRE)임.

◇ 식용동물에서 퀴놀론(Quinolones)의 사용과 인체건강에 미치는 영향

이 회의의 주요 목적은 식품유래 및 기타 세균의 quinolone내성과 인체 질병치료 문제간의 인정된 그리고 잠재적 관련성을 확인하는 것이었음. WHO는 식용동물에서의 fluoroquinolones의 사용이 fluoroquinolones 내성 **Campylo-bacter** 및 fluoroquinolones에 대한 감수성이 감소된 **Salmonella**의 출현을 초래하였다고 결론지었음. 현재까지는 인체 건강상의 이러한 내성의 영향에 대한 자료가 거의 없으나, 내성이 증대되거나 전파되는 경우의 잠재적 건강상의 결과에 대한 우려



가 있음. WHO는 회원국들에게 등록절차의 중요과정으로 항균물질 내성평가와 등록 후 인수공통 질병 및/또는 목적동물 병원체의 감수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포함하도록 요청하였고, 가축 및 어류 양식에서 항균물질의 신중한 사용, 연구의 필요성, 자료수집의 필요성 등을 권고함.

본 위원회는 항균물질의 인체 이외의 사용, 즉 축산, 어류양식, 화훼 및 인체의학분야 이외의 다른 분야에서의 사용이 여러 전문(직업)분야, 기구 및 조직의 관심사항이므로, 항생물질 내성 병원균으로 인한 사람에서의 감염 방지와 관련 식품의 미생물학적 표준을 설정하는 것을 포함하는 식품 생산 및 가공의 모든 측면에서 보다 긴밀한 국제적 협력이 필요함을 인정함.

■ 식품생산에서 항생물질 사용과 관련된 FAO/WHO합동 활동

◇ 식품의 미생물학적 위험평가에 관한 FAO/WHO 합동전문가회의 제안

제22차 Codex 총회는 FAO와 WHO에 식품안전상 미생물학적 측면에서 특히 미생물학적 위험 평가를 위한 국제적 전문가자문기구(JECFA와 JMPR과 유사)를 소집하도록 요청하였음. 제45차 Codex집행위원회(1998. 6)는 어떻게 동기구를 항구적 기구로 설립할 것인가에 대하여 FAO와 WHO간에 논의가 진행중이며, 이와 관련하여 전문자문기구의 활동계획 및 임무를 검토하기 위한 관련 특별회의가 잠정적으로 1998. 12월에 개최될 계획에 있음을 보고하였음.

WHO 대표는 WHO/FAO 합동회의는 항균물질의 인체 이외의 분야 사용과 이로인한 인체 건강상의 영향을 검토하게 될 것이며, 일차적으로는 항생물질의 인체의학 이외의 분야 사용으로 인한 건강상의 영향에 주안점을 둘 것이며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관련 기구간 및 기구내 활동을 조정할 것임

- 식용동물 생산에 있어서 항균물질의 신중한 사용을 위한 실행지침 개발
- 수의 및 농산/어류양식용으로 허가/사용된 항균물질 목록작성
- 농업분야에서의 항생물질 사용/소비에 관한 국제적 데이터베이스 구축
- 어류양식, 원예 및 식품생산에 있어서의 항생물질사용으로 인한 인체건강상의 의학적 위험 및 영향 평가

■ 식용동물에서의 항생물질 사용에 관한 CCRVDF의 토의

◇ 항균물질 내성의 병원균으로 인한 공중보건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인정하면서, 일부 대표는 현재의 문제의 대부분이 의사들의 과다한 항생물질 처방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지적하였음.

그러나, 이들 대표들은 식품유래 및 동물 병원체의 내성이 더욱 증가되고 전파될 경우 인체건강상 결과에 관한 우려도 표명하였음. WHO대표는 우려를 유발할 충분한 증거가 있음을 강조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체의학과 수의학, 농업, 학계 및 국가기관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며, 식품이 관련되어 있으므로 국내 및 국제적으로 해결될 필요가 있는 안전 및 교역 관련 사안들이 제기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하였음. 본 위원회는 금번회의에서는 어떤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다른 국제기구에서의 이 주제에 관한 논의를 기다리기로 합의하였음. 이러한 기구들의 활동에 관한 정보는 차기회의에서 보고하기로 하였음.

■ 양식어류산물과 관련된 식품안전에 관한 FAO/NACA/WHO합동 연구단 보고

WHO(Dr. Moy)는 양식어류산물과 관련된 식품 안전문제에 관한 연구그룹이 1997. 7월 태국에서 WHO의 식품안전과 식량지원 계획으로 FAO수산국, 아태지역 어류양식센타협의체(NACA)의 협조하에 합동으로 개최되었으며, 동 회의에는 15개국 전문가들이 참석하였음을 보고하였음. 동 연구그룹은 양식 지느러미고기 및 갑각류와 관련된 식품안전문제, 특히 이들 양식어류 생산 중 발생할 수 있는 생물학적 및 화학적 오염과 관련된 문제들을 검토하였음. 이 회의의 주요 결론은 양식어류산물과 관련된 위해를 통제하기 위하여 인체 건강과 농업생산, 양식수산에서 식품안전과 교육분야간의 긴밀한 협조가 요구되는 총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식품안전 보증수단은 양식어류의 농장에서 식탁까지 식품안전의 필수 구성요소로서 HACCP에 기초하여야 한다고 하였음.

■ Codex 및 다른 기구에서 위험분석과 관련된 활동보고

제22차 CODEX총회는 Codex 일반원칙분과위원회가 동등성 및 식품안전 목표에 관한 사안을 추가 고려할 것이라는 이해하에 식품안전 위해 평가의 역할에 관한 원칙 4개항목을 채택하고, 식품안전 관련 위험분석 용어의 정의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함. 그러나 Codex에서 위험분석 원칙의 적용을 논의함에 있어서, Codex총회는 동 원칙이 총회에서 채택 될 때까지는 JECFA, JMPR, 기타 권고기구와 Codex분과위원회들은 우선검토대상으로 결정한 위험평가 및 위험관리 요소의 적용을 평가하고 개선하는 작업을 계속하는 것이 요청된다고 권고하였음.

◆ 식품안전에서 위험관리 적용에 대한 FAO/WHO합동전문가협의회

WHO대표는 Codex총회에서 위험관리에 대한 FAO/WHO 합동전문가협의회의 권고안에 대한 검토와 필요한 조처를 제시하도록 요청함. WHO 대표는 위험평가와는 대조적으로 협의에서 제기된 위험관리의 범례(모범)는 위험관리의 실용화가 덜 되었기 때문에 회원국에서 충분히 수용되지 않았다고 함.

◆ 식품섭취량과 화학물질 노출평가에 대한 FAO/WHO 합동전문가협의회

위 협의회는 화학물질에 대한 식품 섭취와 노출평가에 관한 연구보고서(Food consumption and exposure assessment of chemicals)를 통하여 식품에 대한 만성 및 급성 위해요소를 평가하는 방법들을 언급하고, 특히 식품 중 화학물질과 관련하여 여러 Codex 분과위원회간의 위험평가 절차의 더 커다란 조화의 필요성을 언급하였음. 본 협의회는 CCRVDF에 관련될 급성 위해노출평가에 대한 접근을 검토하였으며, 위해특정과 노출평가에 관련된 12개 특수 권고안이 완성하였음.

권고안에 대한 대응으로, WHO는 평균 성인과 6세 어린이 그리고 6세 이하의 어린이에 대한 하루 식품섭취량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고 있음. 회원국에 이러한 정보를 요청하는 Codex 회람문서는 이미 배포되었으며, 조화와 관련하여 협의회는 Codex 분과위원회에 의해서 사용된 식이노출방법을 검토하였으며, 식이노출평가를 표준화하는 수단과 부가적인 노출평가 용어에 대한 정의를 진전시키는 기초로써 보고서에 언급된 용어를 사용할 것을 권고하였음.



◆ 식품표준화와 안전에 관한 위험정보교환의 적용에관한 FAO/WHO합동전문가 협의회

본 협의회는 위험정보교환에 대한 요소와 지도지침안 및 Codex와 각국 정부간의 위험정보교환을 향상시키는 전략을 검토하였음. 협의회는 모든 단체간의 위험정보교환의 개선은 위험정보교환의 과정에 좀 더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이루어질 수가 있으며, 이런 부분들은 모든 관심있는 단체의 참여와 활동, 위험정보교환의 훈련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활용, 대상 청중을 고려한 위험평가정보 문서의 분명한 형태, 전체 진행과정의 투명성을 촉진하는 것을 포함하였음. 각국정부에 대해서는 식품안전 위험상황에서의 위험정보교환에 관한 특별 지침이 제공되었음.

■ 식품중동물약품잔류분과위원회의 위험분석 토의문서 검토

◆ 본 위원회의 의장은 CCRVDF의 위험평가 활동에 대한 토의가 아직은 초기수준이고, 현재로서는 복합개념인 위험평가와 위험관리를 명확히 분리하는데는 실질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였음. 수정안은 프랑스의 Dr. Boisseau에 의해 발표되었으며, 수정안이 FAO/WHO 합동전문가협의회의 위험관리와 위험정보교환에 대한 권고를 고려하여 확대되었음을 밝힘. 그는 본 위원회에 관련된 위험분석의 3가지 요소를 검토하였으며, 특히 위험평가에 관련된 문제는 위험평가정책의 개발이 요구되고 투명성을 위하여 이러한 정책들은 명백하여야 한다고 하였음.

본 위원회는 검토를 위하여 프랑스의 보고서(별첨9, CX RVDF 98/4)를 첨부하기로 하였으며 프랑스가 검토의견들을 받아 차기회의에서 검토할 수정안을 준비하기로 하였음. 네덜란드, 뉴질랜드, 영국, 미국, 국제소비자연맹, COMISA, WHO, WVA 대표들은 프랑스의 이 사업에 대한 노력을 지원할 것을 동의함. 본 위원회는 수정안에 언급이 필요한 특수 위험평가 정책에 관한 문제들을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 하였음.

■ 우수동물사양 실행지침 초안 검토

◆ 제22차 Codex총회는 동물사양과 식품안전성에 관한 FAO전문가협의회의 보고서(Animal feeding and food safety, FAO Food and Nutrition Paper 69)를 집행위원회의 조정과 검토를 위하여 CCRVDF와 기타 Codex분과위원회에 조회시켜야 한다는데 동의 하였음. 식품위생, 식품첨가물과 오염물질, 잔류농약분과위원회에서의 토의내용은 CX/RVDF 98/2 그리고 제45차 집행위원회의 토론내용은 CX/RVDF 98/2-Add. 1에 요약되어 있음.

FAO대표 Dr. J. Paakkanen은 협의회의 결론을 강조하였으며, 대개의 권고사항은 실행 지침 초안에 들어 있다고 하였음. 협의회의 보고서와 권고사항들을 검토하면서 본 위원회는 더 주의가 요구되는 몇가지 문제들을 확인하였음. 특별히

- 사료품질관리, 특히 약제첨가사료 및 제조공정(용량 조정)
- 고정(苦情)처리와 제품회수 관리 절차
- 동물사료의 성분으로서 특정한 육분/어분의 첨가 또는 제외에 관한 요건
- 우수동물사양 실행 부분의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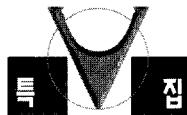
- 공산품의 품질보증(QA)계획 지침에 들어있는 특정 요소의 포함
- 병원체의 방제와 이행잔류를 포함하는 사료의 오염방제를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품질보증 절차의 포함. 약제첨가사료와 관련하여, 몇몇 대표들은 식용동물에서 항균성약제 사용의 의학적 영향에 대한 WHO회의 보고서의 항균제 내성과 관련된 적합한 권고사항을 포함시킬 것을 제안하였으며, 다른 자문단체들도 이 문제를 언급하였음. 본 위원회에는 항생물질 첨가사료의 이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최종 결론에는 이르지 못하였음. 또한 집행위원회는 각 Codex위원회의 역할을 명확히 하거나, 또는 이 지침의 검토를 계속하기 위하여 특정 분과위원회를 지정할 것을 제안하였음.

■ 동물약품등록에 관한 기술적 요건의 조화에 대한 국제수역회의(OIE)활동보고

◇ 국제수역회의(OIE)대표는 1996년 본 위원회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한 이래 **동물약품의 등록에 관한 기술적 조화에 대한 국제협의체(VICH)**에서의 현재까지의 진전상황을 보고하였음. VICH운영위원회는 1997년 8월과 1998년 2월에 파리 OIE본부에서 2회 개최 되었음. 품질관련 5개 지침 초안은 협의를 위하여 세계 각국에 배포 되었음. 5개 작업반의 지침안을 만드는 것과 사업의 평가를 하고 있어, 새 지침초안은 1998년 10월에 개최되는 차기 운영위원회에 제출될 수 있을 것임. 생물학적제제와 약제사용감시(Pharmacovigilance)에 관한 2개 작업반은 현재의 작업반이 지침 초안을 보다 광범위하게 협의하는 단계에 진전되면 그들의 사업을 시작할 것임. VICH의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본 위원회는 차기회의에서 일련의 중·단기 평가를 검토할 것임. 파리 OIE본부에서 항상 회의를 하는 동안, 위원회는 이제는 다른 2개지역(미국, 일본)에서 순환차원에서 회의를 할 것을 결정하였음. 차기회의는 1998년 10월 20-22일에 동경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의견교환의 촉진을 위하여 위원회는 1998년 중 세계 Web site를 설치할 것을 결정하였고, 1999년에는 EU에서 공개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음. OIE대표는 동물약품의 주성분; 국제적 조화(VICH 포함); 회의 조직과 참여, 훈련, 기술 이전 그리고 OIE에 중요한 특별한 주제에 대한 기술자료의 준비 등에 대한 OIE의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였음. 또한, 동물약품 등록에 관한 정부 당국자와의 토론회와 국제적 조화에 관한정보 교환(OIE, VICH, WTO, FAO, CODEX ALIMENTARIUS), 동물용의약품의 사용을 포함하는 어류양식과 관련된 우수생산지침, 수의학분야에서 항균물질 사용과 인체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이 제공 될 **제9차 동물약품등록에 대한 국제기술자문회의**(International Technical Consultation on Veterinary Drug Registration, ITCVDR)가 잠정적으로 1999년 초에 아시아에서 개최될 예정임을 보고하였음.

■ 제48차 및 제50차 FAO/WHO합동식품첨가물전문위원회 보고

◇ FAO/WHO 합동 식품첨가물 전문위원회(Joint FAO/WHO Expert Committee on Food Additives, JECFA)의 FAO 및 WHO 합동 간사들은 제48차 및 제50차 회의의 결과를 요약 보고하였음. 제48차 회의에서는 구충제 2종(moxidectin, thiabendazole), 스테로이드제 1종(dexamethasone), 항균제 8종(ceftiofur, danofloxacin, dihydrostreptomycin/streptomycin, enrofloxacin, flumequine, gentamicin, spiramycin) 및 살충제 2종(cyfluthrin, fluazuron)을 포함 총 13종의 동물약품이 평가되었음.



제50차 회의에서는 구충제 5종(eprinomectin, febantel, fenbendazole, oxfen-dazole, moxidectin), 항균제 5종(gentamicin, sarafloxacin, spectinomycin, chlortetracycline, oxytetracycline, tetracycline, procaine benzilpenicillin), 항원충제 3종(diclazuril, imidocarb, nicarbazin), 스테로이드제 1종(dexamethasone), 생산성 향상약제 1종(r-bovine somatotropin) 및 진정제 1종(azaperone)을 포함, 총 16종의 동물용의약품이 평가되었음.

면집자주

지면관계상 다 신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미개재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호	제 목
11 월 호	<p>I. CODEX란 무엇인가?</p> <p>II. 제 11차 CODEX 식품중 동물약품잔류 분과위원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및 유관 분과위원회 활동 보고■ 축산에서 항균물질 사용에 대한 WHO 활동■ 식품생산에서 항생물질 사용과 관련된 FAO/WHO■ 식용동물에서의 항생물질 사용에 관한 CCRVDF의 토의■ 양식어류산물과 관련된 식품안전에 관한 FAO/NACA/WHO 합동 연구단 보고■ Codex 및 다른 기구에서 위험분석과 관련된 활동보고■ 식품중 동물약품잔류분과위원회의 위험분석 토의문서 검토■ 우수동물 사양 실행 지침 초안 검토■ 동물약품등록에 관한 기술적 요건의 조화에 대한 국제수역회의(OIE) 활동 보고■ 제48차 및 제50차 FAO/WHO 합동식품첨가물전문위원회 보고
12 월 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품 중 동물약품 잔류허용한계 7단계 검토■ 식품 중 동물약품 잔류허용한계 4단계 검토■ 제 7 및 4단계에 보류되어 있는 동물약품의 잔류허용한계 검토■ 국제식품규격의 최대잔류허용한계 개정■ 식품중 동물약품잔류에 대한 분석방법■ 시료채취의 수향능력에 기초한 범위의 검토■ 식품중 동물약품 잔류분석을 위한 통상적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의 확인에 관한 검토■ 주사부위의 잔류에 관한 지침■ 우유와 유제품에서 동물약품 잔류 방지■ 평가 혹은 재평가가 요구되는 동물약품의 우선 순위 검토■ 소수 축종의 동물약품 최대잔류허용한계 설정을 위한 자료요건에 관한 토의문서■ 기타 사업 및 앞으로의 과제■ 차기 회의 일정 및 장소 <p>(1) 종합의견</p> <p>III. 기타사항</p> <p>* 수집자료목록</p>